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254
----------	-----

제출년월일 : 2016. 9.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 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가 없도록 효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및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2조~제3조)
- 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 수립, 안전시설 정비·확충, 관리지역 전수조사, 위험구역 설정·게시 등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7조)
- 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활동, 선발 및 양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15조)
- 라.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 수립, 정보공개 협조 등 물놀이 안전관리 현장 대응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제20조)
- 마. 물놀이 안전관리 예산확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6.2.5.~2.26.) 결과,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 규제(심의대상) ⇨ 규제사항 삭제

규제사항	반영결과
<p>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③ 위험 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p>	<p>“삭제완료”</p>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관할구역의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강·하천, 계곡, 유원지 등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이하 "물놀이"라 한다) 장소 및 시설 중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이하 "안전사고"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행위를 포함한다),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관리지역의 일부장소 중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정·게시하는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구역

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 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은 구역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4.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이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제5조 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5.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안전관리대책기간"이란 해마다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7. "특별대책기간"이란 안전관리대책기간 중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할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사전대비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운영) ① 군수는 체계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마다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이하 "사전대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운영해야 한다.

② 사전대비계획에는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2.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3.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운영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사항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군수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구조를 위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위험, 사망사고 발생지역, 위험구역 설정 등 안내표지판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 구명(투척)로프 및 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군수는 설치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100미터 간격으로 해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전수조사) ① 군수는 체계적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전수조사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군수는 이용객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위험구역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해야 한다.

제3장 안전관리요원

제1절 배치 및 활동

제8조(배치) 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관리지역에서 원활한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인명피해 구조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인력을 확보·충원할 수 있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재난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기관·단체 소속 인력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원봉사자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관리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규모 및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그 밖에 안전취약성

③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외의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④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한 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군수의 안전관리요원 확보·충원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9조(운영기간 및 활동) ①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안전관리대책기간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요원은 제1항에 따른 운영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활동한다. 다만, 특별대책기간과 관리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군수는 그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임무수행 등) ①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예찰 활동
2. 인명구조 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임무

② 안전관리요원은 제1항의 임무수행 중에는 제14조에 따라 군수가 지급하는 필요한 복장 및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휴대해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의 임무수행 상황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이 임무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무단이탈 행위
2. 음주·도박 등 적절하지 못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2절 선발 및 양성

제12조(자격기준 및 선발) ①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수난구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1년 이상의 업무 종사자
3. 대학 이상의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4. 그 밖에 군수가 양호한 건강상태 및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전대비계획에 포함된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모집·선발한다.

제13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1. 구명환, 구명(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수행 요령

② 교육·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안전관리요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충원된 해당 요원에 대해서는 개별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은 해마다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3절 운영지원

제14조(복장 및 안전장비)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에게 임무수행에 필요한 복장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장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사기진작)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운영기간 중 중식 및 간식 제공
2.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개별교육·훈련비
3. 제23조에 따른 표창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현장 대응

제16조(대응계획 수립·운영) ① 군수는 해마다 물놀이 안전관리 현장 대응 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운영해야 한다.

② 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담 특별대책반(TF팀) 구성·운영
2. 제17조의 휴일비상근무반 및 제18조의 현장점검반 편성·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설치·배치
6. 홍보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휴일비상근무반) ① 군수는 안전관리대책기간 중에는 휴일비상근무반(이하 “휴일비상근무반”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휴일비상근무반을 확대·운영해야 한다.

③ 군수는 휴일비상근무반에 배치되어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현장점검반) ①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별로 현장점검반(이하 “현장점검반”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② 현장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점검반은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상황보고) ①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해 강원도지사 및 국민안전처장에게 3시간 이내에 즉시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

치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즉시보고 후 현장점검반이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로 작성·보고해야 한다.

제20조(정보공개 협조 등) ① 군수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현장 재조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해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제21조(예산확보)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1. 안전시설 정비·확충
2. 제14조에 따른 복장 및 안전장비 구입
3.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사기진작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2조(홍보) ① 군수는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당 계획을 홍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등 매스컴
2. 전광판

3. SNS(Social Network Service)
4. 현수막, 반상회보, 전단지
5. 차량이용방송
6. 민방위경보장치 및 재난 예·경보시설
7.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제23조(표창)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 인명피해 구조 등에서 뚜렷한 공적을 거둔 안전관리요원, 관련 기관·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게는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안전시설 정비·확충과 안전관리요원 운영

나. 관련조문 : 조례 제5조 및 제8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정비·확충과 안전관리요원 운영을 위해 비용 발생

나. 추계 결과

- 향후 5년간 비용 : 514,38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보조금 : 17,790천원
- 지방세 : 496,590천원

3. 작성자

작성자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연락처	(033) 330 - 2406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세 출		64,380	111,000	112,000	113,000	114,000	514,380
재난위험지역 표지판 정비 및 설치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보조)		7,580	7,000	7,000	7,000	7,000	35,580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46,800	94,000	95,000	96,000	97,000	428,800
재원 조달		64,380	111,000	112,000	113,000	114,000	514,380
의존 재원	소 계	3,790	3,500	3,500	3,500	3,500	17,790
	보조금	3,790	3,500	3,500	3,500	3,500	17,79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60,590	107,500	108,500	109,500	110,500	496,590
	지방세	60,590	107,500	108,500	109,500	110,500	496,59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